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435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315562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4353 판결

전문

원고A단체

소송대리인 B

피고1. C

2. D

소송대리인 E

변론종결 2021. 5. 20.

판결 선고 2021. 6. 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C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1.자로, 피고 D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C은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25. 접수 제5468호로, 피고 D는 F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3. 8. 접수 제16761호로 마친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 채권

- 1) 원고는 F이 2012. 12. 11. G은행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위 대출금 중 110,500,000원에 대하여 F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이후 F은 2018. 5. 31. 원고와 사이에 위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2019. 6. 11.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원고는 F이 2018. 11. 7. G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위 대출금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F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 3) F은 2019. 3. 10.경부터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부를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9. 9. 20. 위 1)항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13,360,741원을, 위 2)항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40,825,68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F의 부동산 처분행위

- 1) F은 2019. 1. 21.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22,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1. 25.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F은 2019. 3. 6.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3. 8.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F의 재산 상태

F이 위 나.항과 같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F의 재산 상태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①	포항시 남구 H	답	69	1,639	①	가계자금	179,933	
②	위 I	답	20	475	②	대출금	4,647	
③	위 J	답	30	712	③	대출금	150,000	
④	위 K	답	231	5,488	④	대출금 기타재정 시설자금	100,000	
					⑤	일반대출금	30,000	
					⑥	일반대출금	40,000	
					⑦	출하선급금	133,602	
합계		8,314			638,18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C 피고 C은 2011.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2018. 말경 G으로부터 300평 이상 농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다는 통지를 받고 F에게 농지구입을 부탁하였는데, F이 자신의 농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에 위임하여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 C은 F에 대한 위 채권 중 일부 변제조로 토지를 취득하여 G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게 되었고, 당시 F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는 몰랐다.

3) 피고 D 피고 D는 아파트 환기설비업자로서 설비장비 및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설치할 토지가 필요하여 2018. 9.경 F에게 부탁하였고, F이 40평 상당의 자신의 토지를 소개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000,000원을 송금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는 위 매매 당시 F이 채무초과 상태인지를 몰랐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48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처분한 2019. 1.경 또는 같은 해 3.경에는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①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② F은 재정상황 악화로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하고, 2018. 11. 7.에는 50,000,000원을 추가 대출하였으며, 2019. 3.경 이자지급을 지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2부동산 처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할 것이며, ③ 그 후 원고가 실제로 2019. 9. 20.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F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거래가액 22,000,000원으로 처분되었고, 제2부동산은 거래가액 5,000,000원으로 처분되었으며, 위 각 부동산 처분 이후 F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8,314,000원 상당이고, 그 무렵 F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638,182,000원 상당이었는데, F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3)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그리고 F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피고 C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11. 8. 피고 C의 배우자 M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 다음날 F이 위 수표를 친척 N에게 지급하여 같은 날 N의 계좌에 5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계좌의 기록사항에는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은 2018. 8.경 G으로부터 농업인 조합원 확인을 위하여 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조합원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사실, F과 피고 C 사이에 2019. 1.

2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9. 1. 25. 피고 C을 대리하여 법무사 ○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한 사실, 위 부동산 매매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 C은 현재 G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F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9. 1.경 G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하여 농지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위 채무 중 일부 변제로 갈음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부동산 매매 경위, 부동산의 상태(제한물권 없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거래 당시 피고 C이 F의 채무초과(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C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 C과 F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피고 C이 주장하는 금전거래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후에 체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의 악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C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 D의 선의 여부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의 배우자 E이 2018. 9. 29. F의 계좌에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4,689,300원인 사실(을나 제3호증), 위 부동산 매매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 D는 현재 위 부동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위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시가 상당의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고 실제로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부동산 매매 경위, 부동산의 상태(제한물권 없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거래 당시 피고 D가 F의 채무초과(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D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 D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거나, 위 5,000,000원 지급이 매매대금의 지급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D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영철

별지